

4.3.15 타대학이수학점인정규정

제정 2000. 11. 07.
개정 2014. 11. 03.
전부개정 2016. 06. 23.
개정 2018. 12. 04.
개정 2021. 06. 02.
개정 2022. 06. 09.
개정 2022. 07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2조에서 규정한 국내외 타 대학(이하 타 대학)과 협약에 의한 상호 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2.07.28.>

② 단,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(IU-GJ) 공동교육과정에 교류 수학하는 학생에 대한 적용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. <신설 2021.06.02.>

제3조(학점 이수) 타 대학에서 교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18학점 이내이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3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. <개정 2022.06.09.>

제4조(지원자격) 본교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1.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였거나 이수예정인 학생으로 기 이수학기의 평점평균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 다만,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계절학기 및 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2.07.28.>
2. 학칙에 의해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.

제5조(지원신청) ① 본교 1학년 또는 2학년 이상 수료한 재학생으로서 타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류대학 수학신청서를 교류희망학기 개시 2개월 전까지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계절학기 및 타 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교류대학의 운영계획에 따르며 학년 제한을 두지 않는다. <개정 2022.07.28.>

② 학부(과)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류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해당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학의 허가) ① 정규학기 학생 선발자에 대하여 총장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수학기간을 정하여 수학을 허가한다. 단, 계절학기 및 타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른다. <개정 2022.07.28.>

② 정규학기의 수학기간은 본교의 수학연한에 포함하며 학위취득학기에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한다.

제7조(등록) ① 정규학기 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본 대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②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학 대학교에서 정한 수강료를 수학 대학교에 납부한다.

제8조(수학의 취소) ① 교류 대학에서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일수 1/3선 이내에 교류대학수학취소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수학이 취소된 학생은 본교에서 학칙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학을 취소하고 본 대학으로 귀환 조치할 수 있다.

1. 품행이 불량하고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2.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3. 출석이 극히 불량한 자
4. 학교 명예를 훼손시킨 자
5. 기타 학생신분을 전혀 망각한 행위를 한 자

제9조(교과목의 이수 및 학점인정) ① 타 대학에 개설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지도교수는 전공이수에 적합한 과목이수를 우선으로 하여 이수예정과목을 지정하여 수강하도록 한다.

②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.

1. 타 대학에서 이수한 전공교과목이 본 대학교 전공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이수구분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.
2. 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교 과목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일반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04>
3. 교양이나 전공 외 교과목의 경우 교양선택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되 본교 교육과정과 유사한 과목의 경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수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. <2018.12.04>
4. 본 대학교에서 기이수한 과목을 타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5. 타 대학 이수교과목의 학점 및 등급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본 대학교 관련 규정에 맞춰 변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③ 교류학생 소속 학부(과)에서는 교수회의를 통하여 본 대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구분, 학점과 점수를 환산하여 해당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

제10조(타 대학 학생의 수학) ① 본 대학교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속대학교 공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정규학기에 수학할 수 있는 타 대학 교류학생 인원은 정원의 20%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 수학인원은 제한하지 아니한다.

③ 수학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대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학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소속 대학교는 허가취소 즉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본 대학교에 통보한다.

④ 등록금은 소속 대학교에 납부하되 본 대학교 수학 중 발생하는 실험실습비, 시설 사용료 등을 본교에서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⑤ 계절학기 등록금은 본 대학교 계절학기 운영계획에 따르며, 9학점 미만 수강하는 교류학생의 경우 협약에 의해 등록금 납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⑥ 취득한 학점은 성적평가 완료 이후 즉시 소속 대학에 통보한다.

제11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또는 관계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교류 대학간의 협의에 의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